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에 관한 논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중심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Juris Doctor 서현우

1. 들어가는 말

지난 2024년 2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Moody v. NetChoice, LLC* 사건¹⁾ 및 *NetChoice, LLC v. Paxton* 사건²⁾과 관련하여 언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위 두 소송은 SNS 플랫폼 기업들의 연합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가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³⁾을 제한하는 내용의 플로리다 주법과 텍사스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각 주정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SNS 플랫폼 기업이 플로리다 주의 공직후보자를 자사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법이 연방헌법 수정 제1조⁴⁾ 및 제14조⁵⁾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 플랫폼 기업이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로 콘텐츠를 차단 및 삭

1) *Moody v. NetChoice, LLC*, (Docket 22-277).

2) *NetChoice, LLC v. Paxton*, (Docket 22-555).

3) 방송사, 케이블 시스템, 신문과 같은 매체가 규제 범위 내에서 자체 콘텐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의미한다.

4)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연방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5) **미연방헌법 수정 제14조 (공민권)**

(1)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시민이자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적정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용자에게 SNS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권을 부여하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주정부 대변인은 SNS 플랫폼 기업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사용자를 임의로 차별하는 것은 사용자가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검열이라고 반박하였고, 텍사스 주정부 대변인도 텍사스 주법은 내용중립적 규제에 해당하여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⁶⁾

이 사건의 하급심인 플로리다 주 연방법원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문제의 플로리다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도 본질적으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⁷⁾ 유해 콘텐츠에 대한 SNS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텍사스 주 연방법원에서는 텍사스 주법에 대하여 원심은 위헌 판단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⁸⁾ 제2심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검열권을 도출하려는 SNS 플랫폼 기업의 시도는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며, SNS 플랫폼 기업은 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검열은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24년 2월 마침내 연방대법원이 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게 되었다. 9명의 대법관 중 상당수는 플로리다 및 텍사스 주법이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⁹⁾ 이것은 만약 SNS 플랫폼 기업이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혐오표현, 허위정보 유포, SNS 사용계약 미준수자 등을 차단하지 못할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제소 후 현재까지 해당 주법들 모두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금년

6) NetChoice, LLC v. Paxton, (Docket 22-555).

7) NetChoice, LLC v. Attorney General of Fla., 34 F.4th 1196, 1203 (11th Cir. 2022).

8) NetChoice, L.L.C. v. Paxton, 49 F.4th 439, 445 (5th Cir. 2022).

9) US supreme court appears skeptical of social media content moderation laws, *The Guardian*, (February 26, 20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4/feb/26/social-media-moderation-us-supreme-court-case>.

6월에 연방대법원은 SNS 플랫폼 기업이 편집권을 가진 언론의 자유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플로리다 주법 및 텍사스 주법의 배경을 살펴본 후, *Moody v. NetChoice, LLC* 및 *NetChoice, LLC v. Paxton* 사건의 주요 내용과 연방대법원 심리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배경

이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¹⁰⁾와 관련이 있다. 트위터(twitter, 현 엑스), 페이스북(facebook)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플랫폼 기업들은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자’라고 부르짖는 등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 검열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고, 보수 성향의 주지사들 둔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는 2021년 SNS 플랫폼 기업들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게 콘텐츠 큐레이션(콘텐츠를 그 목적에 따라 수집, 선별, 분류, 편집, 구조화하는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하였다. 이로부터 약 2년 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켰지만 해당 주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X, 구글 등을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 넷초이스는 이러한 주법이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0)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Joe Biden)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연방의회 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긴급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날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함으로써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되었다. 시위대는 의사당 내로 진입하여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하원 의장실을 짓밟았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총격 사망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애국자’라 지칭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핵심은 국가가 내용에 근거하여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국가 등 공권력 주체에는 메시지, 사상, 주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문제가 된 다수의 사건에서 법원은 ‘내용에 근거한’(content-based) 규제인지 아니면 ‘내용 중립적’(content-neutral) 규제인지를 구별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여기서 특히 표현 규제가 ‘내용에 근거’했다고 판단할 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쟁점이 되는데, 특정의 ‘견해’(viewpoint)에 대해 규제하는 것만을 내용규제라고 보는 입장과 표현 ‘주제’(subject matter)의 선별에 대한 국가의 관여로까지 확장해서 보는 입장이 대별된다.¹¹⁾

‘견해에 근거한’ 규제란, 주제 혹은 쟁점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나 쟁점에 대한 견해 중 특정의 일방만을 규제하고 다른 쪽의 견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¹²⁾ 예를 들어, 정부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표현만 허용하고 비판적 견해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반면, ‘주제에 근거한’ 규제란, 국가가 표현의 주제 자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공적 논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정치적 진실 추구에 대한 임의적 통제 권력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판시하였다.¹³⁾

한편 연방대법원은 어떤 규제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표현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개인에 대해 공공시설에 임의적인 게시를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은 그 게시가 다루는 주제나 견해에 상관없이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내용 중립적 규제에 해당한다.¹⁴⁾

11) 최희경, 미국헌법상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법리와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2013, 3-4면.

12) Clay Calvert, “Free Speech and Content-Neutrality: Inconsistent Applications of an Increasingly Malleable Doctrine,” 29 McGeorge L. Rev. 69, 76 (1997).

13) Consolidated Edison Co. of N.Y., Inc. v. Public Service Commn., 447 U.S. 530, 538 (1980).

14) Members of the City Council of Los Angeles v. Taxpayers for Vincent, 466 U.S. 789 (1984).

연방대법원은 표현규제가 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아니면 내용 중립적 규제인지에 따라 상이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용규제인 경우, 즉 표현의 특정 내용을 이유로 그 표현행위를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적용한다.¹⁵⁾ 따라서 정부의 행위가 합헌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당해 행위가 ‘긴절한 국가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의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이(necessarily related) 입증될 경우에만 합헌으로 판단한다.¹⁶⁾ ‘필수불가결한’의 의미는 그 법률이 최소한의 제한 수단이거나 최소한의 차별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 최소한의 제한 수단(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이 아니라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¹⁷⁾ 이와는 달리 내용 중립적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¹⁸⁾을 적용하여, 입법목적이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중요한(important) 정부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substantially related)이 있는 경우에만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⁹⁾²⁰⁾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SNS 플랫폼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SNS 플랫폼 자체가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SNS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SNS 플랫폼 기업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SNS 플랫폼 자체는 언론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광범위한 대중의 표현과 담론을 담아내는 공론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경우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한하는 법률은

15) United States v. Playboy Entertainment Group, 529 U.S. 803, 817 (2000).

16) Turner Broadcasting System v.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512 U.S. 622, 641 (1994).

17) Ashcroft v. ACLU, 535 U.S. 564, 600 (2002).

18) Craig v. Boren, 429 U.S. 190, 210 (1976).

19) United States v. O'Brien, 391 U.S. 367, 377 (1968).

20) Rostker v. Goldberg, 453 U.S. 57, 78 (1981).

오히려 SNS 플랫폼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적 규율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을 주법을 통해 억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SNS 플랫폼 기업이 행하는 유해 게시물 검열 및 삭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있다.

3. 사건개요

2021년 5월 24일, 플로리다 주지사는 SNS 플랫폼 기업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물으며 플로리다 주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로리다 주 ‘상원 법안 7072’(Senate Bill 7072)²¹⁾에 서명했다. 이 주법은 연간 총매출이 1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월간 개별 SNS 플랫폼 참가자가 1억 명 이상인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자신이 부당한 검열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SNS 사용자는 주정부로 하여금 해당 SNS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²²⁾

특히 이 주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규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콘텐츠 통제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 SNS 플랫폼 기업의 ‘검열’(censoring), ‘그림자 차단’(shadow banning), ‘공개 표현 금지’(deplatforming)²³⁾와 같은 특정 형태의 콘텐츠 통제를 금지하는 것이다.²⁴⁾ 또한 SNS 플랫폼 기업이 공공기관 입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것도 금지한다. 둘째는 개별적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²⁵⁾으로 SNS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SNS

21) 2021년 5월,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소셜 미디어 검열 중지법’으로도 알려진 법안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보수 성향 여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22) Fla. Stat. § 501.2041 (5).

23) 상원 법안 7072에서 ‘검열’은 사용자가 게시한 모든 콘텐츠나 자료를 제한, 편집,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게시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자 차단’은 사용자나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나 자료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공개 표현 금지’는 사용자를 금지하거나 사용자의 게시물을 14일 이상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Fla. Stat. § 501.2041(2)(j) (2022); Moody v. NetChoice, LLC, (Docket 22-277).

25) Fla. Stat. § 501.2041(2)(d)(1) (2022).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7일 이내에 그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에는 그러한 조치를 한 근거와 SNS 플랫폼 기업이 해당 게시물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플로리다 주법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 협회는 플로리다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플로리다 주법 7072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법률선점주의(Preemption Doctrine)²⁶⁾원칙에 따라 연방법에도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플로리다 주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플로리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021년 6월경 플로리다 북부의 연방지방법원은 SNS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우선순위를 낮추는 것에 대하여 연방법이 선점하고 있으며, 문제의 플로리다 주법의 규율내용은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ment)을 규제함으로써 SNS 플랫폼 기업이 향유하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²⁷⁾ 연방지방법원은 문제의 플로리다 주법이 SNS 플랫폼 기업들이 진보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전제 아래 보수주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주법이 긴절한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중대한 국가 이익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플로리다 법무부 장관은 제1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제11연방항소법원은 SNS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시청자의 피드(feed)나 검색 결과에서 특정 게시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약관을 위반한 사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보호하는

26) 연방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률은 최고의 법원으로서 모든 주법률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연방법에 명시적으로 모순되거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각 주법률을 정지시키거나 연방법을 우선(supersede)하여 적용할 수 있다.

27) *Moody v. NetChoice, LLC*, No. 4:21-cv-00220 (N.D. Fla.) (June 30, 2021).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²⁸⁾ 또한 SNS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정보 운송업자가 아니라 편집재량권을 가지고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블 운영자로 간주했다. 케이블 운영자가 특정 채널을 선택하여 전송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행위이므로, 케이블 운영자에게 특정 TV채널의 전송을 강요하는 정부의 규제 행위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⁹⁾

한편, 2021년 9월 9일 미 텍사스 주의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처럼 월간 이용자가 5,000만 명 이상인 SNS 플랫폼 기업에 대해 텍사스 주민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게시물을 차단, 금지, 삭제, 퇴출, 탈수익화, 제한, 거부, 기타의 차별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텍사스 주 ‘하원 법안 20’(House Bill 20)을 통과시켰다. 이 주법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용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³⁰⁾ 특히 해당 주법은 플로리다 주법과 마찬가지로 SNS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수정하는 경우 그때마다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그러한 조치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게시물 삭제에 대해 SNS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³¹⁾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SNS 플랫폼 기업이 편집재량권을 가지므로 문제의 텍사스 주법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텍사스 주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텍사스 서부의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1년 12월경 텍사스 서부의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텍사스 주법이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특히 SNS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수정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28) NetChoice, LLC v. Attorney General of Fla., 34 F.4th 1196 (11th Cir. 2022).

29) *Id* at 1212.

30) Texas governor signs bill prohibiting social media giants from blocking users based on viewpoint,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9,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09/09/govgregabbott-social-media-censorship-bill>.

31) Tex. Bus. & Com. Code Ann. § 120.103(a)(1).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동 플랫폼에 게시되는 표현물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강조하여 실시하였다.³²⁾

이에 텍사스 법무부 장관은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제5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동 주법 제7조³³⁾는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열을 규제하여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7조는 SNS 플랫폼 기업 자신의 표현을 전혀 규제하지 않으며, SNS 플랫폼 사용자들의 표현을 보호하고 해당 기업의 자의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어서 중간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³⁴⁾

이렇게 제11연방항소법원과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되면서 2023년 9월 20일 플로리다 법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에 제11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³⁵⁾를 신청하였고, 9월 29일 원고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연방대법원에 제5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를 신청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각 상고허가를 인용하였다.

4.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드러난 대법관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2024년 2월 26일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열어 약 4시간에 걸쳐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제기한 플로리다 주법 7072 및 텍사스 주법 20과 관련한 헌법소송을 심리했다. 핵심 쟁점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나 선동의 위험이 있는 게시물을 언론처럼 편집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연방대법원이 비록 보수 우위(대법관 6명 보수, 3명 진보)의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소송의 향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32) NetChoice, LLC v. Paxton, 573 F. Supp. 3d 1092 (W.D. Tex. 2021).

33) Texas HB20 Section 7, Title 6, Section A143A.006.

34) NetChoice, L.L.C. v. Paxton, 49 F.4th 439 (5th Cir. 2022).

35)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 신청에 대한 심리는 권리가 아닌 사법부 재량으로 상고허가의 청구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용된다. 현저한 사유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동일한 주요 사안에 관하여 다른 항소법원의 결정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중요한 연방 문제에 관하여 주의 최고법원의 결정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경우, 일반적이고 승인된 재판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하급심의 이러한 일탈을 인가하여 대법원의 감독권의 행사가 요청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심리에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상당수는 플로리다 주법 및 텍사스 주법이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⁶⁾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앨리토(Samuel A. Alito) 대법관은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이 검열이 아닌 ‘콘텐츠 큐레이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격적인 행위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포장하는 완곡어법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클라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검열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판시한 선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Brett M. Kavanaugh)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 사회에서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념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전적으로 어긋남을 강조하였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해당 플로리다 주법 및 텍사스 주법에 따라 규제받게 되는 기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에 몇몇 연방대법관들은 이메일 제공, 다이렉트 메시징, 자동차 공유 등과 같은 특정 비표현적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여름 휴지기 전인 6월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5. 나가는 말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SNS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담론 문화 자체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 법무부는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

36) Justices appear skeptical of Texas, Florida social media laws,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26,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4/02/26/supreme-court-social-media-netchoice-texas-florida>.

이다.³⁷⁾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체로 SNS 콘텐츠나 게시물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견지해 왔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SNS상에서는 보건당국 대응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퍼졌다.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부의 불안감을 넘어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백신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열린 미국 대선 이후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SNS 선동이 난무했고 이듬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마저 벌어졌다. 여기서 소개한 넷초이스 사건과 유사하게,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SNS 플랫폼상에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소송도 제기되었다. 2022년 초 바이든 미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인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X(옛 트위터) 등에 접촉해 코로나 관련 정책이나 선거보안 문제 등에 관한 허위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³⁸⁾ 2022년 5월 공화당 소속의 루이지애나 주 법무장관과 미주리 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해 2023년 제5연방항소법원은 정부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줬다.³⁹⁾ 2024년 3월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하였고 상당수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⁴⁰⁾

아직까지는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통제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연방대법원은 올 11월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인 큰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SNS 플랫폼 기업의 편집재량권과

37) DOJ: States' Social Media Laws Violate First Amendment, Government Technology, (August 15, 2023). <https://www.govtech.com/policy/doj-states-social-media-laws-violate-first-amendment>.

38) Federal Judge Limits Biden Officials' Contacts With Social Media Sites, The New York Times, (July 4, 2023). <https://www.nytimes.com/2023/07/04/business/federal-judge-biden-social-media.html>.

39) State of Louisiana v. Biden, No. 22-30019 (5th Cir. 2022).

40) Supreme Court leans against limiting Biden administration contacts with social media platforms, NBC News, (March 18, 2024). <https://www.nbcnews.com/politics/supreme-court/supreme-court-tackles-government-coercion-claims-social-media-nra-case-rcna143391>.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